

제22차 정보공개심의회 회의결과

일시 /장소	○ 일 시: 2026년 7월 30일 (목요일) ○ 장 소: - (서면심의)				작성자	운영지원과 정보공개담당자		
					심의요청부서	OOOOOO과		
참석위원	심사위원	직 위	성 명	확 인	심사위원	직 위	성 명	확 인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OOO		위원	외부위원 (교수)	OOO	
	위원	청렴정책 총괄과장	OOO		위원	외부위원 (변호사)	OOO	
	위원	외부위원 (변호사)	OOO		위원	외부위원 (변호사)	OOO	
	위원	외부위원 (교수)	OOO					
심의방식	서면심의							
상정안건	제2026-60호	1. 최초 청구 및 결정사항 ○ 접수번호: 16977521						
		* 청 구 인 : ○○○(접수일: 2026. 7. 1.) * 청구내용 :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 관련 사건 상태값 기능설계 자료, “청구 접수 대기” 상태의 상태값 정의서, 설명자료 등 * 부서 결정사항 : 비공개(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제5호) ※ ‘사건 상태값 기능설계 자료, “청구 접수 대기” 상태의 상태값 정의서, 설명자료’ 비공개, 그 외 자료 정보부존재						
		2. 이의신청 내용 * 이의신청 내용 : 공개 가능한 부분을 분리 공개하고, 부존재한다면 그 사유를 명확히 밝혀주기 바람						
		3. 이의신청에 따른 부서 검토의견 * 검토의견: 기각(세부사유 안건자료 참조)						
의견내용	[기각]							
	○ 기각 의견 ○ 주요 의견 내용 -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의 상태값(코드값) 등 기능 설계자료 및 분석자료는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의 내부 운영체계, 처리절차 및 기술개발에 관한 정보라고 볼 수 있음 -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의 내부 운영 체계 및 처리 절차가 외부에 노출되어 해킹이나 사이버테러 등 행정정보 보호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함 - 또한 해당 정보는 정보시스템의 기능 설계 및 분석 등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이를 이용하여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의 운영에 장애를 초래하는 등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함
결정사항	○ 기각